

울산광역시중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박홍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42
----------	-----

발의년월일 : 2010. 2. .

발 의 자 : 박홍규·박문태·김석준 의원(3명)

1. 제정이유

- 어린이공원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 어린이공원의 관리계획 수립(안 제4조)
- 어린이공원의 안전점검 기준(안 제5조)
- 안전점검 결과 기준 미달사항에 대한 조치(안 제6조)
- 어린이공원 살피미 자원봉사활동 참여(안 제7조)
- 예산확보 관한 사항(안 제8조)

3. 제정 조례안 : 따로 붙임

4. 근거법규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9조
-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47조

울산광역시중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공원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어린이공원”이라 함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 중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47조제1항에 따라 설치 및 유지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에 적용한다.

제4조(관리계획 수립)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공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공원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각종 시설물의 유지·보수
2. 취사, 불법 주·정차, 애완동물 동반(목줄을 맨 경우 제외),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등 행위의 방지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
4. 모래시설의 중금속 검사와 놀이기구 안전관리를 위한 정기점검
5. 모래시설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6. 수목의 식재와 관리(어린이 보건을 저해하는 수목은 제외)
7. 그 밖에 시설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설치 등

③ 구청장은 어린이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폐쇄 회로 텔레비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5조(안전점검) 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안전점검을 위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그 밖의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라 구청장은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점검결과 조치)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 기준 미달사항은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자원봉사활동 등) 구청장은 어린이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공원 살피미’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예산확보)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수립한 어린이공원의 관리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9조(표창) 구청장은 어린이공원에 대한 관리실태를 매년 종합점검 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09.12.29] [법률 제9860호, 2009.12.29, 일부개정]

[국토해양부](#) (녹색도시과), 02-2110-6197

연혁 제15조(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① 도시공원은 그 기능 및 주제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1. 생활권공원 : 도시생활권의 기반공원 성격으로 설치·관리되는 공원으로서 다음 각목의 공원

가. 소공원 :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나. 어린이공원 :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

다. 근린공원 :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

2. 주제공원 : 생활권공원 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되는 다음 각목의 공원

가. 역사공원 : 도시의 역사적 장소나 시설물, 유적·유물 등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나. 문화공원 : 도시의 각종 문화적 특징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다. 수변공원 : 도시의 하천변·호수변 등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여가·휴식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라. 묘지공원 : 묘지이용자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 안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묘지와 공원시설을 혼합하여 설치하는 공원

마. 체육공원 : 주로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바.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공원

② 제1항 각호의 공원이 갖추어야 하는 규모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연혁 제19조(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① 도시공원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공원조성계획에 의하여 설치·관리한다.

② 2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도시공원의 관리자 및 그 관리방법은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하여 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당해 도시공원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때에는 관할도지사에게,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공동으로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재정이 있을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기 전이라도 [제50조](#)에 따른 시·도도시공원위원회 또는 시·군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09.12.29>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에 따라 이동편의 시설을 설치 또는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

2. 기존 공원시설부지에서 공원시설을 변경하는 경우(골프장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그 밖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공원의 관리를 위

하여 긴급하게 공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5항에 따라 공원시설을 설치한 때에는 빠른 시일 내에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여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09.12.29>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설치기준·관리기준 및 안전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9.12.29>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47조 (공원의 사무구분)①공원에 대한 시와 구 군간의 사무관할 구분은 별표 5와 같다.

②공원의 취득·조성 및 기존시설 등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의 시행에 따른 소요 비용은 제1항의 사무 관할 구분에 따라 부담한다. 다만, 시장은 구 군의 재정형편 등을 감안하여 구·군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별표 5] <개정 2008. 1. 10>

도시공원의 사무구분(제47조제1항관련)

구 분	시	구·군
공 원	도시공원(소공원, 어린이공원 제외)의 조성계획입안,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공원, 어린이공원의 조성계획입안 설치 및 관리 ○ 도시공원의 관리, 다만, 위탁시설물의 관리는 제외
녹 지	녹지(완충,경관,연결)의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지의 관리

의안심사보고서

(의안번호 742)

1. 의안명 : 울산광역시중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0. 2. 4(목)

나. 제출자 : 박홍규·박문태·김석준 의원

다. 위원회 회부 : 2010. 2. 11(목)

라. 위원회 심사 : 2010. 2. 24(수)

3.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박홍규 의원)

가. 제안이유

- 어린이공원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함.

나. 주요골자

- 어린이공원의 관리계획 수립(안 제4조)
- 어린이공원의 안전점검 기준(안 제5조)
- 안전점검 결과 기준 미달사항에 대한 조치(안 제6조)
- 어린이공원 살피미 자원봉사활동 참여(안 제7조)
- 예산확보 관한 사항(안 제8조)

4. 근거법규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9조
-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47조

5. 검토의견 (전문위원 성낙팔)

- 본 조례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중구에 조성되어 있는 어린이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하여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 주요내용은 어린이공원의 관리·지원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사항과, 공원내 시설물의 안전검사, 모래의 중금속 검사 등에 관한 사항과 개인 및 단체를 ‘공원 살피미’로 위촉하여 공원내 시설물 파손여부, 환경정비 등 봉사활동을 전개 하도록 하고, 이러한 봉사단체 들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지원에 관한사항 및 우수 기관, 단체에 대한 표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 등을 규정 하는 것으로,
- 현재 구 관내 조성되어 있는 도시공원 57개소 중 어린이공원이 53개소이며, 혁신도시 단지 등 현재 12개소가 추가조성 중에 있으나, 어린이공원 관리 인력은 2명으로서 원활한 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본 조례를 제정하여 어린이공원의 구체적인 관리계획을 마련, 주기적인 시설 점검과 환경정비 등을 통한 효율적인 공원관리로 어린이들에게 쾌적한 시설공간을 제공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